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463호

의 안 명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의 결 일 2022. 6. 13.

주 문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6월 13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안성욱

위원 이정희

위원 김기표

위원 강재영

위원 박계옥

위원 박상희

위원 이근동

위원 박홍규

위원 임성문

위원 손난주

위원 강길연

위원 최정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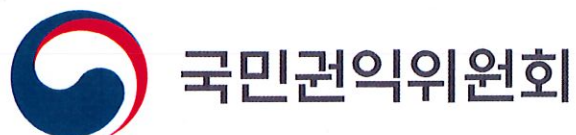
위원 송현주

<별 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2022. 6. 13.



A C R C

■ ■ ■ 목 차 ■ ■ ■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현황	2
III. 문제점	6
1.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관련 현재결정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	6
2.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불합리	8
3.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에 대한 보훈혜택 제한규정 미비 ..	13
IV. 개선방안	15
1.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개선	15
2.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 보훈급여금 등 제한	18
V. 조치사항	19
[붙임1] 대상법률 조문 개선안(예시)	20
[붙임2]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동순위 유족 지급순위 규정 비교	27
[붙임3] 동순위 유족 상세현황	30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국정과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국정과제 109)
'국가보훈대상 유족 예우·지원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이하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의 유족에 대해 보훈급여금, 각종 생활안정 지원정책 실시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총 4조 3,415억원이며, 이 중 유족 지급액은 '20년 기준 1조 5,331억 원(35.3%)임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같은 순위가 다수인 경우(자녀가 다수 등) 연장자 우선 기준에 따라 연장자 1명만 보상금·수당 등 지급 대상
 -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는 연장자 우선 보상금 지급순위 규정 그대로 유지
 -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유족 1명 선정으로 생계곤란 유족이 보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 발생
- 또한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에 대해 보훈급여금 등 혜택 제한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제한규정 미비
-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보훈 유족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안 마련: '21. 11월 ~ '22. 4월
- 제도개선안 관계기관 의견조화: ~ '22. 5월 중순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22. 6월 중순

II. 제도현황

□ 보훈대상자 개념 및 현황

- (개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 (현황) 소관 법률별 보훈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소관법률	대상자	유족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이하 '독립유공자법')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 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제일학도 의용군인, 4·19사망·부상·공로자, 순직·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 상이공로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 공상군경, 지원순직·공상공무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사망·부상·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사망·부상·공로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참전유공자법')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환자(20개 질병),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3개 질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제대군인법')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대상) 총 840,402명이며 본인 587,358명, 유족 253,044명임

구분	2019년			2020년			2021.10월		
인원수(명)	소계	본인	유족*	소계	본인	유족	소계	본인	유족
	843,770	609,710	234,060	841,119	597,298	243,821	840,402	587,358	253,044
△ 독립유공자법	8,036	36	8,000	8,351	25	8,326	8,522	16	8,506
△ 국가유공자법	396,229	173,054	223,175	404,057	171,785	232,272	411,484	170,426	241,058
△ 보훈보상자법	5,252	4,034	1,218	6,021	4,544	1,477	6,445	4,818	1,627
△ 5·18유공자법	4,410	3,579	831	4,406	3,533	873	4,416	3,496	920
△ 특수임무유공자법	3,786	2,950	836	3,811	2,938	873	3,867	2,934	933
△ 참전유공자법	284,631	284,631	-	267,902	267,902	-	254,916	254,916	-
△ 고엽제법	51,793	51,793	-	51,741	51,741	-	51,389	51,389	-
△ 제대군인법	89,633	89,633	-	94,830	94,830	-	99,363	99,363	-

※ 참전유공자, 고엽제, 제대군인 지원 관련 3개 법률은 유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 보훈대상자의 희생·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훈급여금**과 **의료·교육·취업·대부** 등 각종 지원제도로 구성
-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성되며, 보상금(부가수당 포함)이 전체 보훈급여금의 60% 상회
- '20년 기준 보훈급여금은 4조 3,415억원이며, 이 중 유족 지급액은 1조 5,331억 원(35.3%)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연도별 보훈급여액 지급 현황 >

(단위: 백만원 /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0월
보상금	본인	1,573,856	1,620,824	1,710,379	1,479,391
	유족	1,121,732	1,173,523	1,230,959	1,042,732
	소계	2,695,588	2,794,347	2,941,338	2,522,123
(부가수당)	본인	(145,906)	(147,309)	(148,877)	(161,517)
	유족	(122,382)	(123,997)	(124,896)	(103,828)
	소계	(268,288)	(271,306)	(273,773)	(265,345)
수당**	본인	1,193,336	1,105,887	1,092,039	897,942
	유족	251,299	280,923	298,798	270,630
	소계	1,444,635	1,386,810	1,390,837	1,168,572
사망일시금	본인	5,716	5,467	5,967	4,640
	유족	3,299	2,919	3,373	2,912
	소계	9,015	8,386	9,340	7,552
합계	본인	2,772,908	2,732,178	2,808,385	2,381,973
	유족	1,376,330	1,457,365	1,533,130	1,316,274
	총계	4,149,238	4,189,543	4,341,515	3,698,247

*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등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참전 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재해보상금, 장제보조비

○ (생활안정지원) 취업, 의료·교육 및 기타 지원

구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교육 지원	○ 수업료 등 면제: 배우자(전몰·순직군경)·자녀(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전몰·순직 국가유공자 배우자(대학교), 자녀(중·고)	○ 수업료 등 면제: 배우자(재해사망)·자녀(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재해사망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대학교), 자녀(중·고)
취업 지원	○ 보훈특별고용: 배우자, 35세 이하인 상이 6급 이상 자녀 1명 ○ 가점취업·직업훈련: 부모, 배우자, 6급 이상 자녀	○ 보훈특별고용: 배우자(부모, 자녀는 제외) ○ 가점취업·직업훈련: 배우자
의료 지원	○ 보훈병원 진료: 선순위 유족 1인(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모두 지원) ○ 위탁병원 진료: 75세 이상 보상금 수급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배우자(60% 감면) ○ 위탁병원 진료: 재해사망군경배우자 및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 배우자(75세 이상 60% 감면)
대부 지원	○ 대상: 선순위 유족 1인 - 주택(구입,임차,개량), 아파트(분양,임대),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대부한도액은 300~8,000만원까지(연 2~3%)	○ 대상: 수권유족인 배우자 - 주택(구입,임차,개량), 아파트(분양, 임대),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대부 한도액은 300~8,000만원까지(연 2~3%)
주택 우선 공급	○ 대상: 선순위 유족 1인 ○ 신규건설·공급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5%, 임대 10%(공급물량기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 2%(공급물량기준)	○ 대상 : 수권유족인 배우자 ○ 신규건설·공급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5%, 임대 10%(공급물량기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2%(공급물량기준)
기타 지원	○ 재해위로금(선순위 유족) - 30만~500만원 ○ 장기요양급여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지원요건 해당자) ○ 고궁 등 무료이용 / 협약콘도 감면이용 ○ 생업지원(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우선지원)	○ 재해위로금(선순위 유족) - 30만~500만원
타법에 의한 지원	○ 의료급여증 발급: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시(선순위 유족) ○ 개인택시 우선 면허 ○ 이동전화요금 감면(선순위 유족) ○ 전화요금 감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국내항공 요금 30% 할인(선순위 유족, 항공사별 할인요율 다름)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선순위 유족)	○ 의료급여증 발급: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 시(선순위 유족)

□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기준

- 배우자, 자녀 등의 순서로 규정,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다수인 경우
① 유족 간 협의, ② 주된 부양·양육자, ③ 연장자 순서로 1명 선정

< 동순위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

구분	유족범위·순위	지급순위
독립 유공자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 4. 머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1. 유족 간 협의 2. 주된 부양·양육자 3. 연장자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1. 유족 간 협의 2. 주된 부양·양육자 3. 연장자(단, 부모는 균분)

※ '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법의 선순위 유족 선정기준 준용¹⁾

□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현황

- 전체 유족 525,783명 중 지원 대상이 되는 선순위자²⁾는 253,410명³⁾이며, 나머지 지원받지 못하는 동 순위자는 272,373명임

구분	선순위·동순위 유족			동순위 유족(선순위자 포함)					
	합계	선순위자(A) (수권자)	동순위자(B) (지원제외 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합계	525,783	253,410	272,373	159,008	25,510	21,407	19,291	14,001	14,193

※ 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유족 포함

- 1) 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유족은 보상금 대상은 아니지만 선순위 유족 1명은 수당·생계지원금('22.2.18. 시행), 대부·의료·주택공급 등 수혜
- 2) 동일한 순위의 유족 중에서 순서가 앞서는 유족(1명)임.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3명 중에서 선순위자 1명 선정 시 협의 불성립, 주된 부양자도 없는 경우에 연장자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됨
- 3) 보상금 소관부서 관리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이며 유족 등록 수에서 일부 차이 있음
- 4) 부모도 선순위자는 1명이며 보상금을 받는 부모는 균분지급이므로 동순위자인 부모도 일부 지원 대상이 됨

Ⅲ. 문제점

1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관련 현재결정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가 유족 선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가 다수인 경우(자녀가 다수 등)
 - ① 유족 간 협의, ② 주된 부양·양육자, ③ 연장자 순으로 1명 결정*
- *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는 연장자 우선 등의 보상금 지급 일반 원칙 규정
-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주된 부양·양육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순위자 중 연장자 1명만 유족 보상금·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됨
- ※ 특히 자녀, 손자녀(보상금 비대상)가 다수인 경우 연장자만 보호되는 불합리 발생
- 헌법재판소는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 3건의 개별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음

<헌법불합치 결정 요지>

연장자 우선기준은 보훈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같은 순위 유족 중 수급권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한정하는 등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를 1명으로 한정하면서 수급권자 수 확대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불합리

<주요 세부 내용>

사례① 헌법재판소 2013.10.24. 선고 2011헌마724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사례② 헌법재판소 2018.6.28. 선고 2016헌가14

-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보훈보상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사례③ 헌법재판소 2021.3.25. 선고 2018헌가6

- 6·25전몰군경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를 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나 관계 부처 조치사항

- 국가보훈처는 현재 결정 이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 해당 보상금·수당(3건)에 대해 선정기준을 개정하거나 개정 검토 중에 있음

※ 연장자 우선 등 보상금 지급 원칙을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 일반 조항은 개정하지 않고, 해당 보상금·수당에 국한하여 개정하거나 검토 중임.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부모는 예외적으로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함

<해당 법률 개정 진행 사항>

사례①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손자녀 1명 한정 및 연장자 우선

➡ 손자녀 보상금 수급권자를 1명으로 유지하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하도록 독립유공자법 개정('15.1.1.시행)⁵⁾

사례②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부모 1명 한정 및 연장자 우선

➡ 부모 간 보상금 수급권 경합시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보훈보상자법 개정('20.1.1.시행)

사례③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명 한정 및 연장자 우선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국가유공자법 개정 추진 중('22.12.31. 입법기한)

-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서 규정한 '연장자 우선' 등의 일반 조항은 다른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선정 시에도 그대로 계속 적용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재해위로금 및 의료지원·대부·주택공급 등
<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보훈보상대상자법 제12조 등>

<보상금 지급 일반 원칙>

① 유족 간 협의 → ② 주된 부양·양육자 → ③ 연장자 순 결정(다만, 부모의 경우 균분)

5)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기준(연장자 우선 → 생활수준 등 고려)과 관련하여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합헌 결정을 하였음

<헌법재판소 2018.6.28. 선고 2015헌마304>

법 개정('15.1.1. 시행, 제12668호)을 통해 손자녀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보상금 수급권자 지정에 있어 생활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며, 같은 법 개정('18.4.6. 시행, 제15550호)으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들의 생활안정 지원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손자녀 간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결정

2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불합리

가 연장자 우선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보상금 등 지급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부모 보상금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수당 등에서 '연장자 우선'의 일반 기준은 계속 적용

<연장자 우선 기준 적용 보상금 등>

연장자 우선 일반 기준	보상금 기준 주요 적용사례
◦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보상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대부·의료지원, 주택공급 등
◦ 보훈보상자법 제12조(보상금)	

※ 5·18·특수임무유공자 유족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나 각종 수당·생활지원 시 국가유공자법 제13조를 준용하여 연장자 우선 기준 적용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과 달리 판단할 근거 없음

※ 동순위 유족 중 연장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불합리

- 연장자가 직업·보유재산에 따라 생활수준이 더 나은 경우도 있어 연장자 우선 선정기준은 보상금 등의 사회보장 성격에 반함

※ 독립유공자 손자녀 관련 헌재결정(2013.10.24. 선고 2011헌마724)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직업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비록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나, 협의에 의해 지정된 자를 보상금 수급권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조부모에 대한 부양가능성이나 나이가 많은 손자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생활수준 고려 없는 불합리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 유족에게 보상금 외에 생활안정을 위한 별도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연장자 우선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1명 선정

※ 연장자 기준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을 선정한 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최초 지급대상 선정 시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음

< 생활조정수당 개요 >

▶ (대상) 국가·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본인 및 선순위 유족 1명)
<지급대상 유족> ▶ 보상금 수급자(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비수급 선순위 유족 1명 * 국가유공자법 제14조, 독립유공자법 제14조, 보훈보상자법 제13조
▶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월220~336천원)
▶ (지급현황) 10,218명에게 32,730백만원 지급('20년 결산)

- 연장자 우선 기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유족이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 시 제외되는 불합리 초래
-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전체 약 39만명(391,345명) 유족 중 연장자 기준*에 따라 12만명(123,512명), 약 32%만 지원 대상으로 보호, 나머지 26만 명(267,833명)은 지원 배제
-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연장자 기준에 따른 선순위 유족 12만 명(123,512명) 중 생계가 곤란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는 4.8%(5,923명)로 나타남

('21.10월 기준, 단위: 명)

선순위·동순위 유족			동순위 유족 인원(선순위자 포함)						(A)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합계(A+B)	선순위자 1인(A)	동순위자 (지원 배제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391,345	123,512	267,833	32,967	21,936	21,248	19,200	13,951	14,150	5,923

※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인 국가(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을 대상으로 분석

- 특히, 소득으로 인정되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유족 11만 명(117,152명)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도 4.9%(5,802명)에 불과

- 지원에서 배제되는 동 순위자 26만명(267,833명)은 소액의 수당조차 절실하나 생계곤란 유족이 생활조정수당에서 배제되는 결과 초래

※ 생활지원금⁶⁾ 지급대상 독립유공자 (손)자녀(33,583명*,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34,250명의 생계보호 공백 발생

* 33,583명 중 실제 생활지원금 수급자는 36.4%(12,234명)이며, 이는 같은 순위 유족 중 상당수가 생활수준이 낮음을 의미

<선순위 유족의 생활조정수당 수급 현황('21.11~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인 국가(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을 대상으로 분석 (‘21.10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가)}	선순위·동순위 유족			동순위 유족 인원(선순위자 포함)						(A) 중 생활조정 수당 수급자	
	합계 (A+B)	선순위자 (수권자 인원(A))	동순위자 인원(B) (선순위자 제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총 합계 (①+②)	391,345	123,512	267,833	32,967	21,996	21,248	19,200	13,951	14,150	5,923	
보상금 대상(①)	25,627	6,360	19,267	1,857	1,063	844	686	504	1,406	121	
독립 유공자	소계	24,028	5,815	18,213	1,677	986	743	618	441	1,350	93
	자녀	8,555	3,389	5,166	1,270	753	519	380	244	223	36
	손자녀	15,306	2,262	13,044	246	230	224	238	197	1,127	54
	며느리	54	54		54						
	기타	113	110	3	107	3					3
국가 유공자 ^{나)}	소계	1,598	544	1,054	179	77	101	68	63	56	28
	자녀	1,598	544	1,054	179	77	101	68	63	56	28
	조부모										
	미상년제매										
보훈 보상 대상자	소계	1	1	-	1	-	-	-	-	-	-
	자녀	1	1		1						
	조부모										
	미상년제매										
보상금 비대상(②)	365,718	117,152	248,566	31,110	20,933	20,404	18,514	13,447	12,744	5,802	
독립 유공자	소계	17,797	2,424	15,373	342	260	237	200	190	1,195	160
	자녀	539	252	287	114	64	34	19	13	8	1
	손자녀	17,249	2,163	15,086	219	196	203	181	177	1,187	159
	며느리	5	5		5						
	기타	4	4		4						
국가 유공자	소계	347,463	114,518	232,945	30,669	20,628	20,142	18,291	13,248	11,540	5,625
	자녀	347,463	114,518	232,945	30,669	20,628	20,142	18,291	13,248	11,540	5,625
	조부모										
	미상년제매										
보훈 보상 대상자	소계	458	210	248	99	45	25	23	9	9	17
	자녀	458	210	248	99	45	25	23	9	9	17
	조부모										
	미상년제매										

- 6)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금' 도입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지급(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월345~478천원)

➡ '20년도 결산: 지급인원(월평균) 19,786명, 지급액 81,905백만원

- 7) 상이등급이 낮은 경우 등에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음

다 연장자 우선 기준을 준용하는 생활안정 지원

- 국가보훈대상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및 수당 외에 교육, 의료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의료, 대부 지원, 주택 공급 등 주요 생활지원 사업에서 일률적으로 연장자 우선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1명 선정

< 국가유공자 유족 생활안정 지원제도 현황 >

구분	지원 현황(예시)
의료 지원	○ 대상 - 보훈병원⁸⁾ 진료: 선순위 유족 1명(부모는 모두 지원) - 위탁병원⁹⁾ 진료: 75세 이상 보상금 수급 선순위 유족 1명 ○ 지원 내용: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국비 지원, 감면진료 등
대부 지원	○ 대상: 선순위 유족 1명 ○ 지원내용: 주택 (구입,임차,개량), 아파트(분양,임대),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대부한도액 300~8,000만원(연 2~3%) 등
주택 우선 공급	○ 대상: 선순위 유족 1명 ○ 지원내용: 신규건설·공급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5%, 임대 10%(공급 물량 기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2%(공급물량기준) 등

※ 생활안정지원사업 중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명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중·고·대학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학습보조비도 지원하고 있음

- 생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유족의 생활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생계 곤란 유족보다 연장자가 우선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8)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 6곳 운영

9) 보훈대상자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한 435개소('21.8월) 의료기관

라 일률적인 보훈대상 유족 수 1명 한정

- 보훈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가 다수인 경우(자녀가 다수 등) 단지 **1명만 지원대상 유족**으로 인정하여 보상금 및 수당,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유족 선정방법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서 ① 유족 간 협의, ② 주된 부양·양육자, ③ 연장자 순으로 1명만 결정하도록 규정(부모의 경우 균분지급)

- 생활 수준 고려 등을 통한 분할 지급 등 지원대상 유족을 확대할 수 있는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

※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2018헌가6,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수당의 지급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더라도, 6·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 생활 정도에 따라 수당을 적절히 분할 지급하는 등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것은 불합리

- 국민·공무원연금법 등 유족연금 등을 규정한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동 순위 유족이 다수인 경우 **1명으로 한정하지 않지 않고, 모두 지원 대상**

※ 주요 입법례: 동순위 유족 2명 이상인 경우 균등분할

구분	연금·급여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국민연금법	유족연금	균등분할(법 제73조제3항)
② 공무원연금법	퇴직유족급여	균등분할(법 제32조)
③ 공무원재해보상법	재해유족급여	균등분할(법 제11조제2항)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②, ③	균등분할(법 제37조)
⑤ 별정우체국법	유족급여	균등분할(제24조의4제2항)
⑥ 군인연금법	퇴직유족급여	균등분할(법 제11조)
⑦ 군인재해보상법	재해유족급여	균등분할(법 제10조제2항)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	유족보상일시금
	급여	유족보상연금
		분할가능(동법 시행령 제60조)

- 재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생활안정지원 균등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유족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예시: 보훈지원 대상 유족 확대하는 경우

- ▶ (보훈급여) 보상금 등을 균등분할 지급 또는 일정 생활수준 이하자에게 지급 등
- ▶ (대부지원) 주택·자영사업·생활안정 대부한도 현재 총액 범위 내에서 균분 등

3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에 대한 보훈혜택 제한규정 미비

가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제한규정 부재

○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없음

※ 현행 규정상 부모 간 협의나 양육여부 등으로 부모 1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따라서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도 부모 간의 협의나 균등분할의 방법 등으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음

- 보훈 대상 부모 7,801명에게 지급된 보훈보상금은 총 1,423억('2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국가유공자 부모	8,283	136,644	7,870	136,709	7,127	132,102	6,914	130,576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607	7,117	765	9,190	809	10,513	887	11,742
합계	8,890	143,761	8,635	145,899	7,936	142,615	7,801	142,318

<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에 대한 타 법률 제한 규정 >

- ▶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개정('21.6.23. 시행)
 - (내용)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2개 법률 개정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에 대해 재해·퇴직유족급여 전부·일부 감액
 - (절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21.6.18. 제출)

상속권 상실제도(「민법」 제1004조의2)

- (사유)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 (절차)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 결정

나 보상금 등 제한규정 도입 시 관련 세부규정 보완 필요

○ 제한규정 도입 시 부모의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기준, 후순위 유족 제한 신청 절차 및 후순위 권리 이전 등 규정 마련 필요

※ 보훈법령에 주거·생계 현황, 경제적 지원 및 범죄행위·학대 등 양육책임 해태·불이행 여부 세부 판단기준 구체화 필요

< 참고 법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의 감액) ① ~ ⑤ (생략) ⑥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의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① ~ ⑤ (생략) ⑥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5의2] 공무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별표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대상자	판단 시 고려사항	대상자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1. 공무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공무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공무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공무원등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한 정도	부모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

IV. 개선방안

1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개선

가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기준 폐지

○ 보훈급여금 등 지원 대상 선정 시 '연장자 우선' 기준 전면 폐지

- '연장자 우선' 기준 대신 '생활수준'을 고려하거나 '균등분할' 지급 등 다양한 선정기준 마련

< 같은 순위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 규정 비교 >

순위	지급대상 선정기준	현행	개선
①	동순위 유족 간 협의	○	○ (현행 유지)
②	주로 부양·양육한 자	○	○ (현행 유지)
③	연장자 우선	○	× (폐지)

※ '생활수준'을 고려한 유족 선정방법(개선안 예시)

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준용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선정(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의2)

① 협의에 의해 수급자 1명 지정

② 소득·재산 상태, 장애 및 연령 등 고려하여 선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8. 나이가 많은 자

* 같은 호(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1~6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 우선

* 각 호(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기준(7~8호) 적용

- ②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내 생활수준조사 시스템(국가보훈처) 활용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조사하여 추가 대상 결정

< 생활수준조사 프로세스 >

구분	신청	생활수준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
처리 내용	신청서 접수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매월 계좌입금	변동관리, 부적정·수급자, 통계 등
처리 소관	관할 보훈(지)청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연계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보상정책과	관할 보훈(지)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으로 국세청, 금융기관, 국토부 등 정보보유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급여 등 소득내역, 재산보유 현황 등) 회신

나 일률적인 보훈대상 유족 수 1명 한정 폐지

○ 보훈 지원 대상 유족 선정 시 예외 없는 '1명 한정' 기준 폐지

- 생활수준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거나, 동순위 유족 모두에게 균분지급 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

※ 생계 곤란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등 지급, 동순위 유족이 다수인 경우 유족 수에 따른 가산 지급 등도 중장기 검토 등

개선안(예시)
□ 지원 대상 확대 및 선정기준(예시) [동순위 유족 중 생활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유족 지원] ▶ 생활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유족을 대상으로 균등분할 또는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생활수준이 일정기준(ex.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이하인 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는 생활수준 등이 낮은 1명을 대상으로 지원 ※ 보훈급여금 소액화, 생활안정지원대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원 수 제한 [동순위 유족 균분 지급] ▶ 원칙적으로 유족에게 보상금·수당 등을 균분 지급하나 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기준 설정도 가능 ※ (예시) 생활조정수당: <현행> 선순위자 1명 → <변경> 일정 생활수준 이하자 부양가족수당: <현행> 보상금 수급 자녀 1명(연장자) → <개선> 유지 (부양가족수당은 미성년 제매를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 [지원대상 선정기준] ▶ 유족 간 협의(1명) → 주된 부양·양육자(1명) → 생계 곤란자(또는 균분)

- (예시) 예를 들어, 보훈급여금은 균분 지급하더라도 생활안정 지원은 선순위자 기준과 같이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등 보훈보상·지원 체계 개선 추진
- ※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다수이더라도 대표자 선정 시 1명에게 전액 지급 가능
- ※ 전체 동순위 유족 중 부모(2.3%)·배우자(23.0%)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녀(68.6%)·손자녀(6.2%)가 선순위자 선정대상임

다 생활안정 지원제도 탄력적 운영

○ 일률적으로 연장자 우선 기준 등을 준용하는 생활안정지원제도 개선

- 제도별 취지·특성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생활수준 고려 시 생활수준 변동에 따른 지원대상 수시 변경 방지를 위해 일정기준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기준 해당 시 변경, 재지정 신청 제한기간) 등 검토

[지원기준] 보상금 지급순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보상금 지급 규정과 분리하여 별도기준 검토

구분	주요 지원사항(예시)	
대부	1명 또는 0명 이내 * 조건 충족 시 현행 대부 한도액(주택대부, 자영사업, 생활안정) 균분 등	
주택우선공급	1명 또는 0명 이내 * 분양·임대주택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결정	
의료	보훈병원	1명 또는 0명 이내 * 현재 '12.7월 이후 등록 국가유공자 유족은 선순위 유족 1명으로 제한(부모는 모두 지원)
	보훈위탁병원	1명(75세 이상 보상금 등 수급 선순위 유족 1명, 부모도 동일)
	의료급여증 발급	1명 또는 0명 이내

⇒ 각종 수당, 의료·대부지원 규정 등에서 준용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 (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개정

※ 붙임1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예시

2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 보훈급여금 등 제한

가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에 대한 보훈혜택 제한규정 마련

-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에 대해 보훈급여금 등 보훈혜택 제한규정 명시
 - 동·후순위 유족 등이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훈 급여 등 제한 결정
 - ※ 양육책임 불이행 기간·정도·범죄행위 등을 고려하여 보상 등 제한 결정
 - 후순위 유족에게 보훈 대상 선정절차 안내 규정 등 마련

나 보훈혜택 후순위 유족 이전 등 세부규정 정비

- 급여 등 전부 제한 시 해당 부모에게 부여되는 보훈혜택을 후순위 유족에게 이전 규정 등 마련
- 부모의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구체화
 - 보훈대상자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경제적 지원 정도 고려
 - 이 밖에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의무 위반 및 복리침해 여부 등도 판단기준에 포함

⇒ 유족범위, 보훈혜택 제한 조문 개선

▸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 붙임1 :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예시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①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개선	▪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기준 폐지 ▪ 일률적인 보훈대상 유족 수 1명 한정 폐지 ▪ 생활안정 지원제도 탄력적 운영 ※ 5개 법률(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	국가보훈처	'23.12.
②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보훈급여금 등 제한	▪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에 대한 보훈혜택 제한규정 신설 ▪ 보훈혜택 후순위 유족 이전 등 세부규정 정비 ※ 4개 법률(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	국가보훈처	'23.12.

□ 개선방안①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개선안(예시)은 보상금 지급기준과 연계돼 있는 수당·생활안정지원제도 등 준용규정을 보상금 기준과 함께 일괄 변경한 것이며, 보상금 기준과 분리하여 별도기준을 설정한 경우(ex. 생활수준 고려, 1명 한정 등)도 예시로서 참고사항임
-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생활안정 지원기준을 보상금 지급기준과 별도로 설정할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 기준 검토

현 행	개선안(예시)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u>선순위자 1명</u>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u>선순위자 1명</u>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u>선순위자 1명</u> ② ~ ⑤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u>선순위자</u>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u>선순위자</u>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u>선순위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선안(예시)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u>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u>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u>나이가 많은 사람에게</u> 보상금을 지급하되, <u>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u> <u>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u> <u>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생략)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u>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u> 보상금을 지급한다(또는 <u>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u>). 다만, <u>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u> <u>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u> <u>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2항제3호 전단에 따른 선순위자나 부 또는 모에게</u>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현행	개선안(예시)
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u>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u>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u>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u>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망일시금) ① ~ ④ (생략)	제17조(사망일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진료) ① ~ ④ (생략)	제42조(진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u>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u>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u>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u>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u>	⑥ (현행과 같음)
⑦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u>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u>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u>

현행	개선안(예시)
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위자. 다만,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와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다만,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명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명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

현 행	개 선 안(예 시)
	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개선방안②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선 안(예 시)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④ (생략)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u>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u>제4항의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해당 급여 등의 전부를 제한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u>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1. ~ 4. (현행과 같음)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 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u>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u>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u>제4항의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조제○항제○호에 따라 급여 등의 전부를 제한하는 경우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u>

현 행	개 선 안(예시)
<신 설>	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조(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상 등의 제한)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선 안(예시)
<신 설>	제○○조(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감액) ① 법 제7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보훈급여금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한 후 그 결과를

현 행	개 선 안(예시)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급여제한심의대상자 및 보훈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보훈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 가.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⑥ 국가유공자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붙임2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동순위 유족 지급순위 규정 비교

기존(헌법불합치결정 전)	현행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13.10.24. 시행) (‘13. 6. 19.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1. 10. 21. 시행)
[동(同) 순위 유족 지급순위] ①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선순위자로 지정된 자 → ②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③ 나이가 많은 자	[동(同) 순위 유족 지급순위] 좌동
제12조(보상금) ① (생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를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상금) ① (생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현행과 같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8.6.28. 시행) (‘18. 6. 14.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1. 10. 21. 시행)
[동(同) 순위 유족 지급순위] ①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선순위자로 지정된 자 → ②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 → ③ 나이가 많은 자	[동(同) 순위 유족 지급순위] 좌동(부모는 균분)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u>구분에 따라</u> 보상금을 지급한다. 1. <u>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보훈 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한다.</u>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u>협의를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u>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u>순서에 따라</u>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u>협의를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u>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u>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u>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u>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u>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 7. 1. 시행)	법률 ('21. 12. 9. 시행)
[동(同) 순위 유족 지급순위] ① 유족 간 <u>협의를 의해</u> 선순위자로 지정된 자 → ② 국가유공자를 주로 <u>부양·양육한 자</u> → ③ <u>나이가 많은 자</u>	[동(同) 순위 유족 지급순위] 좌동(부모는 균분)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u>구분에 따라</u> 보상금을 지급한다. 1. <u>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u>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u>순서에 따라</u>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u>협의를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u>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 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12. 31. 기한으로 입법조치 예정

붙임3

동순위 유족 상세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21.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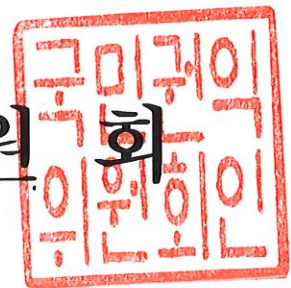
구분	선순위·동순위 유족			동순위 유족 인원(선순위자 포함)					
	합계 (A+B)	선순위자 (수권자 인원(A))	동순위자 인원(B) (선순위자 제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총 합계(①+②)	525,783	253,410	272,373	159,008	25,510	21,407	19,291	14,001	14,193
보상금 대상(①)	94,163	71,841	22,322	64,283	4,118	844	686	504	1,406
독립 유공자	소계	24,270	6,057	18,213	1,919	986	743	618	441
	배우자	242	242	242					
	자녀	8,555	3,389	5,166	1,270	753	519	380	244
	손자녀	15,306	2,262	13,044	246	230	224	238	197
	며느리	54	54	54					
	기타*	113	110	3	107	3			
국가 유공자	소계	68,168	64,681	3,487	61,883	2,510	101	68	63
	배우자	57,161	57,161		57,161				
	자녀	1,598	544	1,054	179	77	101	68	63
	부모	9,409	6,976	2,433	4,543	2,433			
	조부모								
	미성년제매								
보훈 보상 대상자	소계	1,725	1,103	622	481	622			
	배우자	234	234		234				
	자녀	1	1		1				
	부모	1,490	868	622	246	622			
	조부모								
	미성년제매								
보상금 비대상(②)	431,620	181,569	250,051	94,725	21,392	20,563	18,605	13,497	12,787
독립 유공자	소계	17,811	2,438	15,373	356	260	237	200	190
	배우자	14	14		14				
	자녀	539	252	287	114	64	34	19	13
	손자녀	17,249	2,163	15,086	219	196	203	181	177
	며느리	5	5		5				
	기타	4	4		4				
국가 유공자	소계	409,879	176,716	233,163	92,649	20,846	20,142	18,291	13,248
	배우자	61,669	61,669		61,669				
	자녀	347,463	114,518	232,945	30,669	20,628	20,142	18,291	13,248
	부모	747	529	218	311	218			
	조부모								
	미성년제매								
보훈 보상 대상자	소계	843	556	287	406	84	25	23	9
	배우자	289	289		289				
	자녀	458	210	248	99	45	25	23	9
	부모	96	57	39	18	39			
	조부모								
	미성년제매								
5·18 민주	소계	1,449	923	526	677	104	67	34	27
	배우자	528	528		528				
	자녀	819	307	512	75	90	67	34	27
	부모	102	88	14	74	14			
	조부모								
	미성년제매								
특수 임무	소계	1,638	936	702	637	98	92	57	23
	배우자	541	541		541				
	자녀	1,085	384	701	86	97	92	57	23
	부모	12	11	1	10	1			
	조부모								
	미성년제매								

* 증(고)손자녀 포함

정 본 입 니 다 .

2022. 6. 14.

국 민 권 익 위 원 회



ACRC